

보도시점 2025. 3. 17.(월) 12:00 / 배포 2025. 3. 17.(월) 08:30  
< 3. 18.(화) 조간 >

## 포장용기류 구매 강제한 가맹본사 제재

- ‘족발야시장’ 가맹본부 (주)올에프엔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94백만원)을 부과하였다.

\* (주)올에프엔비의 2023년 말 기준 매출액은 224억 원이고, 231개의 족발야시장 가맹점을 운영 중

(주)올에프엔비는 2023. 11. 29.부터 2025. 1. 8.까지 가맹점주에 대하여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래 포장용기(13종)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였다.

\* (주)올에프엔비는 해당 제품들을 가맹점주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물류업체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음

| 포장용기류(13종)  |   |   |   |
|---|---|---|---|
|  |  |   |  |
| JH-3  | JH-3두칸  | JH-06   | JH-21   |
|  |  |  |   |
| JH-70   | JH-71   | JH-84   |   |

|   |   |   |
|---|---|---|
|  |  |  |
|  |  |  |
| 70파이/소 뚜껑 및 용기  | 105파이/대 뚜껑 및 용기   | 신195/소 뚜껑 및 용기  |

(주)올에프엔비는 가맹계약 체결 시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제품을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하였다.

**가맹계약서(공급품 관련)**

**제34조 (공급품 공급의 중단)**

- ① 가맹본부는 (중략)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공급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후략)
- 6. 가맹점사업자가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급품을 스스로 조달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제43조 (계약의 해지)**

- ① 가맹본부는 (중략)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후략)
- 3. 가맹점사업자가 제34조에 따른 **공급품의 중단과 관련된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 계약조항에 따라 (주)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제품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적발 되는 경우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강제하였다.

**가맹점 점검내역**

|    |                |         |    |            |    |
|----|----------------|---------|----|------------|----|
| 36 | JH-70호/실링용기    | ○       | 45 | 70파이/소/뚜껑  | ○  |
| 37 | JH-71호/실링용기    | 중단용기 구매 | 46 | 105파이/대/뚜껑 | ○  |
| 38 | JH-84호/실링용기    | 중단용기 구매 | 47 | 진공포장       | 배관 |
| 39 | JH-3/실링용기      | 중단용기 구매 | 48 | 물티슈 포장인쇄   | ○  |
| 40 | JH-6/실링용기      | 중단용기 구매 | 49 | 신195/소/용기  | ○  |
| 41 | 70파이/소/용기      | ○       | 50 | 신195/소/뚜껑  | ○  |
| 42 | 105파이/대/용기     | ○       |    |            |    |
| 43 | JH-21호 두칸/실링용기 | ○       |    |            |    |

공정위는 (주)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이하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면서 손쉽게 자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및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 안착을 위하여 지난 2월부터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기재사항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 “공정위,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2025. 1. 24. 보도자료)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       |                      |     |     |                    |
|-------|----------------------|-----|-----|--------------------|
| 담당 부서 | 기업거래결합심사국<br>가맹거래조사팀 | 책임자 | 팀 장 | 박진석 (044-200-4620) |
|       |                      | 담당자 | 조사관 | 윤두호 (044-200-4618) |

